

동해권·접경지벨트 인프라 구축, 거대시장 진출 신평탄

③ 남북경제공동체 상생발전

통일북방경제프로젝트 추진때

환동해권 요충지로 중점 부각

동해북부선 등 구축 필수

중국·유럽 대외시장 확대

■남북강원도 경제협력 기대

4·27판문점 선언과 12일 예정된 북미정상 회담을 계기로 남북경제협력사업 재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은 한반도 통일·북방경제시대 대비를 위한 핵심 사안이며 남북경제협력 중심지로 전세계 유일분단도인 강원도 동해권이 먼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직결된다. 대북제재 해소 방안이 마련될 북미



강산과 원산·단천·청진·나산을 남북이 공동개발 후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것이다. 접경지역 벨트는 설악산과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고 DMZ를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는 환경·관광·평화벨트다.

또 남북접경지역이 통일경제특구로 지정되면 남북통합관광경제권 블록 운영이 가능해 남북접경지역 교류만으로도 남북 경제의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남북동해권 접경지역 경제벨트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SOC구축이 필요, 인프라 측면에서도 도가 남북경제협의 중심지가 될 수 밖에 없다. 동해북부선(강릉~제진)연결과 원산까지 이어질 춘천~철원 고속도로, 양양공항·갈마·삼지연 공항, 속조항·장진·원산항 등의 남북평길·하늘길·바닷길에 대표적이다. 북한이 현재 원산을 중심으로 세계적 해양관광단지를 조

성하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에 나 서고 북강원도에는 현동공업개발구와 금강산관광특구가 지정돼 남북강원도간 조 기 경제협력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대북전문가들은 남북강원도 의 동해권 접경지역 벨트를 중심으로 남북경협이 가동될 것으로 보고 유라시아 대륙까지 연결되는 이 벨트의 무한 잠재력을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원도에서 북한을 통과, 동북아로 향하는 인프라가 구축되면 동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유라시아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남북강원도 경제벨트는 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등 주변국의 대외경제협력 정책과 상호연결된다는 점에서 남북경제협력 제 1지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지은

다. 이와 관련, 도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환동해권과 접경지역 벨트를 가진 요충지 로 이중 환동해권이 중점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자원벨트인 환동해 벨트는 금

정상회담 후 한반도를 H축으로 있는 환동해·환서해 접경지역 벨트와 이를 중국, 러시아, 유라시아까지 연결하는 통일북방 경제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것으로보인

정선~북면 도로 개량, 15일 중심제 집행

주간 입찰동향

조달청, 이번주 총 1527억 35건 대기

조달청은 이번주(6.11~6.15)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수요 '국도42호선 정선-북면간 2차로 시설개량공사' 등 모두 35건, 1527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주요 입찰을 살펴보면, 오는 12일 적격심사 방식으로 △조전-대곡간(2) 4차로 확포장공사(경상남도·218억1100만원) △국립민속박물관 개방형 수장고 및 정보센터 건립 공사(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178억8700만원)를 집행한다.

이어 15일에는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국도42호선 정선-북면간 2차로 시설개량공사'(국도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364억2900만원)를 집행한다. 앞서 열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는 모두 91개 건설사가 통과해 이날 투찰에 나설 전망이다.

같은 날 적격심사 방식으로 △대구국제

고등학교(가칭) 신축공사(대구광역시교육청·241억2500만원) △양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경기도 양평군 환경사업소·139억8900만원) △여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토목공사(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김포지사·120억7700만원)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주 집행하는 입찰은 경상남도 수요 '조전-대곡간(2) 4차로 확포장공사' 등 집행 건수의 약 75%(31건)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대상 공사다.

조달청은 전체의 약 36%인 550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22건, 157억원 규모다. 또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는 9건, 812억원 상당이다. 이 중 393억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참여해 수주할 전망이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기도 502억원, 강원도 368억원, 경상남도 281억원, 그밖의 지역이 376억원이다. 한상준기자 newspia@

아하! 그렇구나

계약한 공법대로 시공하지 않은 경우 사기 편취액

Q 공사업체가 공사 초반을 제외하고는 계약한 특수공법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의 범위는?

A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인 수퍼웨이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계약한 공사구간에서 계약과 달리 시공단가가 이보다 싼 일반발파 공법으로 시공한 뒤 허위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발주처로부터 160억원을 받아 가로채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편취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죄가 인정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에 관하여 △△컨소시엄이 얻은 실질적 이득액이 수퍼웨이 공법으로 산정된 공사대금과 실제 굴착공사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의 액수 미상의 차액임을 전제로 △△컨소시엄이 얻은 이득액이 16,837,000,000원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수퍼웨이 공법 계약 구간에서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화약발파를 시작하여 실제로 수퍼웨이 공법으로 시공한 구간은 공사시작 후 최초 기성금 지급일인 2015. 4. 24까지

의 기간 초반 일부에 불과해 보이고, 안전과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하여 화약발파에 비하여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수퍼웨이 공법으로 시공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피고인 합○○ 등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수퍼웨이 공사 계약 구간 중 상당한 부분을 계약의 취지에 반하는 형태로 공사를 한 후 마치 계약대로 공사를 시공한 것처럼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기망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기망행위로 지급받은 기성금 전부가 편취액에 해당하고, △△컨소시엄이 취득한 이득액 또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기성금 전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4. 12.선고 2017도21196판결)'라고 판시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위 판례는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동원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